

예 켄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1401 (전화번호 22-6372) 전결규정 조 호 전결사항

처리기한 기 안 자 결 재 자
 시행일자 사 회 과 시 장
 보존년한 기 안 일 자 결 재 일 자
 67. 12. 21.

보 제 2 부 시 장
 조 보 건 사 퇴 국 장
 기 사 회 과 장
 관 조 조 개 장

협 조 법 부 담 당 사 회 과 장 이 산 과 장
 경 수 유 신 각 인 조 발 정 송 서
 참 조

제 목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운영요강 변경

(제 1안) 내부결재 **예 켄 제 166호**

1.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조례 제4조의 구성이
 의거 동식당에 필요한 시립 후생식당 운영요강을 실정하여 운
 영하고 있는바
2. 금번 68년도 예산책정에 있어 67년도 예산에 책
 정된 1일 급식정원 3,100명과 취사부(잡급) 39명을 68년도에는
 1일 급식정원 3,000명(100명 삭감) 취사부 28명(11명 삭감)으로
 예산이삭감되어 부득히 동요강을 별첨과 같이 변경 실정 운

1967. 12. 29 413 2209 서울특별시 600

영후저 재검을 바랍니다.

(제2안)

14

2

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시 장

제목 동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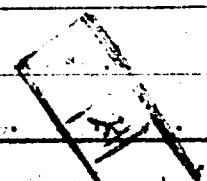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후생식당운영요강을 실정운영하고 있는바 급반
 급식정원 및 취사부 인원이 ~~사감소~~ 감함에 따라 동운영요강을 별
 첨과 같이 변경운영케 되었으니 앞으로 동요강을 준수하여
 식당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것.

2. 현재 성동.영등포.동대문합숙소에서 차출 성북구
 중계동 이동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사부는 각원대상에서
 제외한 인원으로 조정할것이며 또한 동대문합숙소에서 차출
 된 1명은 성북식당 소속으로 이동 ~~조치~~ 한다.

3. 변경된 시립후생식당운영요강은 1968. 1. 1부터
 시행할것.

첨부 시립후생식당운영요강 1부 끝.

수신처 서칭 4-9 서사 29. 30.



예규 () 호 1967 주 10 공판
 시립 후생식당 운영 요강 (827호)

1. 목적 **예규 제 166 호**

국민경제행상인 및 영세부동근모자 또는 국민병세민으로 하여금 업가로 주식(국수 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 향상 및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가. 본식당은 구청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나. 본식당은 매일 10시에 개업한다.

다. 1일 밥식정원은 다음과 같다.

(1) 1일 급식정원

식당별 구분	성동	성북	서대문	마포	용산	영등포	동대문	남대문	합계
급식정원	800인	800 400	500 400	400	500 150	300	400 150	400	3,000

라. 식사는 1인 1식 소백분(건면) 300그램으로 한다.

마. 부식비는 1인 1식 3원으로 한다.

바. 배식자로부터 징수하는 가격은 1기당 8원으로 한다.

사. 식사에 필요한 주부식 및 기타 운영비는 시짜부담으로 한다.

3. 식대 징수방법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데금은 당일 17시까지 별지 서식의 남부서에 의하여 ^{당해주의사회복지장책임대기} 시금고에 불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1일을 연장할수있다.

나. 공류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운영비 경리

가. 주식용 양곡(소백분 및 건면)은 시에서 일괄구입 배정하고 부식비 및 기타운영비는 구청장에게 영달경리케한다.

나. 식당운영 및 식대징수를 위하여 식당책임직원을 정규직원으로도 지정하여 담임케한다.

다. 식당 담임직원은 식당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일보로서 보고하고 구청장은 10일간 식의 순보로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5. 종사원(고용원)사용

가. 종사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고용원 정원표

식당	성동	성북	서대문	마포	용산	영등포	동대문	남대문
구분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취사부	2 5	2 7	2 4	2 4	1 4	1 3	1 1	1 2

총계 28

6. 이요강은 1968. 1. 1부터 시행한다. ㅁ

1967. 12. 29

서울특별시장

시립후생식당 운영 요강 (정정)

1. 목적 영세부동근로자 및 국민영세민으로 하여금 열가로 주식(국수 1기씩)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향상 및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 가. 본식당은 구청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 나. 본식당은 매일 10시이 개장한다.
 - 다. (1) 남대문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500명으로 정한다.
(2) 성동(성수동, 신당동)마포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400명으로 정한다.
(3) 성북, 서대문(북아현동, 종은동)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200명으로 정한다.
(4) 용산, 영등포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300명으로 정한다.
 - 라. 식사는 1인 1식 소백분(건반)300그램으로 한다.
 - 마. 부식비는 1인 1식 3원으로 한다.
 - 바. 매식자로부터 징수하는 가격은 1기당 8원으로 한다.
 - 사. 식사에 필요한 주부식 및 기타운영비는 시가 부담으로 한다.
3. 식대 징수방법
 -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대금은 당일 17시까지 별지 서식의 남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불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1일을 연장할수 있다.
 - 나. 공휴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운영비 경리
 - 가. 주식용 양곡(소백분)은 시에서 일괄구입 배정하고 ~~수입비~~ 및 기타운영비는 구청장에게 영달 경리케한다.
 - 나. 식당운영 및 식대 징수를 위하여 식당 책임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지정하여 도입케한다.

다. 식당 도입 직원은 식당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일보로서 보고하고 구청장은 10일간씩의 순보로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5. 종사원(고용원)사용

가. 성동(성수동·신당동) 파조식당은 종사원 각5명중 조리사 각1명 췌사부 각4명으로하되 남자 각2명 여자 각3명으로 한다.

나. 성북·서대문(북아현동·홍은동)식당은 종사원 각3명중 조리사 1명 췌사부 각2명으로하되 남자 각1명 여자 각2명을모한다.

다. 기타식당은 조리사 각1명 췌사부 각3명으로하되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한다.

6. 이요강은 1966. 5. 1부터 시행한다.

6

11

6

417

2214